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85
----------	-------

발의연월일 : 2025. 7. 23.

발 의 자 : 김재원 · 이해민 · 정춘생
신장식 · 최혁진 · 임오경
서왕진 · 차규근 · 윤종오
황운하 · 한창민 · 강경숙
강득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조정, 운영개선 명령 또는 지정 취소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현재의 평가 제도는 일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방만한 운영이나 낮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 없이 국가재정이 계속 지원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문화유산 돌봄사업 전반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평가 결과와 연계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청장이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하게 운영되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대하여 지정 취소, 지원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5 및 제80조의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5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0조의6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0조의6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지원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80조의6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③·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u>

③ (생 략)	<u>해당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지원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